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2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2월 29일

3. 제안 이유

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“2000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”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함

4. 주요 골자

○ 용어의 정의 : 사업명 변경에 따라 용어 정의 추가 및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

(안 제2조 제1호, 제6호, 제7호, 제11호, 제12호)

- 추가 :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, 지역특화사업

- 조문정리 : “중소기업”을 “중소기업자”로, 아파트형공장 건설자의 관련조항 개정에 따라 “제29조제2항”을 “제28조의2의제1항”으로, “시장개발사업자”를 “시장재개발사업자”로 하고, “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”을 삭제함

○ 기금의 관리·운용 등 (안 제5조제2항)

- “중소기업시설개체(구조조정)지원자금,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,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”을 “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”으로 통합 관리·운용
- “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” 신설
- “중소유통구조개선지원자금”을 “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”으로 개정

○ 기금의 지원대상자 (안 제6조제1항제1호, 제5호)

- “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”를 “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”로 함
- “시장개발사업자”를 “시장재개발사업자”로 함

○ 기금의 사용 등 (안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)

- 시달된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